미래의학연구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미래생명의학과학을 선도할 유망 기술·연구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창조적인 생명과학 연구와 이를 활용한 융복합연구를 발굴·추진하며, 이를 수행하는 차세대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생명의학과학 분야를 창조적으 로 변모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부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국제·국내대회 개최
- 2. 미래 유망 의학생명과학자 지원
- 3. 미래 지향적 도전적 과제 발굴 지원
- 4. 기타 의·과학 및 유관 미래 연구 분야를 지원
- ②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음의 부대 및 수익사업 가. 부동산 임대사업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 (재산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부동산 포함)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 ① 제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및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1조(지출의 원칙)

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3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이 법인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4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① 법인은 다음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 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의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2.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3.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보수제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9인
- 3. 감사 2인
-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 중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③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21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등)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선임방법 등)

- ①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 중 사퇴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여 야 한다.
- ④ 이사장이 차기 이사를 지명하고, 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사로 선임한다.
- ⑤ 임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20조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0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경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법인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조직

제35조 (고문단과 전문위원)

- ① 법인의 주요정책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단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단은 국내외 인사로 법인의 연구활동에 조언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위원은 국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 ③ 고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추대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사업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0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

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